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0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학부모들이 AIDT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용 도서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선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32조(기능)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디지털 교과용 도서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선정</u>
5. ~ 14. (생략)	6. ~ 15. (현행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신설>	② <u>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4호(교과용 도서로 한정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임.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안 및 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들 심의 사항 중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등을 한정하여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²⁾,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수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앞서, 교육부가 2025년 2월에 사전 실시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학부모의 68.3%가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였음.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선정률이 90%를 초과하는 등 그 선정 과정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자체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률 >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4.4	38.3	99.1	19.0	14.8	21.1	16.9	13.3	4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3.8	57.4	15.7	34.3	16.4	57.8	10.0	52.9	34.4

※ 선정률: 전체 학교수 대비 선정 학교수
자료: 교육부, '25.4.30. 기준(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부모 의견 의무 수렴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과 디지털 교과용 도서 및 디지털 교육 자료의 선정 또한 이에 포함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등에 보다 충실히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국립학교는 학칙, 공립학교는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 전체회의,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³⁾, 개정

3)(예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

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학부모 위원 외의 일반 학부모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안 제32조제1항제5호의 ‘디지털 교과용 도서’ 및 ‘디지털 교육 자료’ 개념은 현행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⁴⁾, ‘디지털 교과용 도서’나 ‘디지털 교육 자료’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종래에는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적 매체의 형태로 제공하던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간주해 왔으나, 개정안에서 ‘디지털 교과용 도서’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할 경우 기존 분류 체계와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9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3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4)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화하면서도 ‘교육 자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안 제32조제 2항). 그러나 이와 같은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교육 자료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교육 자료’와 ‘디지털 교육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됨.

둘째, 교원의 교과용 도서 선택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부모 의견 의무 수렴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⁵⁾은 교과용 도서 등 선정에서 교원 판단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교과용 도서 선정 등을 학부모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적 재량 및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셋째, 개정안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이나, 운영에 있
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학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사항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음(시행령 제59조의4 미준
용). 그럼에도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
일하게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고유한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6)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
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학운위 심의 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교과용 도서 선정 과정에서까지 학부모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경우, 교원의 교과용 도서 선택에 대한 전문성 및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대구교육청: 신중검토 - 교과용 도서 선정은 교원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분야로 학부모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제주교육청: 신중검토 -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로 인해 교과서 선정 과정 지연 및 교과서 선정 과정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학부모 간 갈등 또한 우려됨.
○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중검토 -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이 의무화될 경우 발행사의 학부모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선정 공정성 저해 우려됨. - 교과서·교육자료 선정은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고유권한으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문 의 처
02)6788-5184